

		2017.2.16.(목)				
	보도자료	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/ 사무관 최진수 (Tel. 044-200-2437)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 지원팀 팀장 이민영 / 사무관 신인철 (Tel. 044-200-2665)				
	_	문의 미래 <b>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</b> 과장 송상훈 / 사무관 류신욱 (Tel. 02-2110-2834)				
		<b>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</b> 과장 이성훈 / 사무관 정경인 (Tel. 044-201-3912)				
* 엠바고 : 2.16.(목) 15:00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						

### 4차 산업혁명 막힌 길, 규제혁신으로 뚫는다

-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, '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' 개최

# 브리핑 : 2.15.(수) 10:30, 정부세종청사, 규제조정실장

- 황 권한대행, 경제난관 돌파할 미래 먹거리,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강조
- KDI, 사후규제 등 규제방식 전환 필요, 시범사업, 실증특례제도 적극 활용 해야

#### — < 주요내용 > —

-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6일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'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'를 주재하였음
  - 취지는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차원임
- 황 권한대행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며,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함
- 이날 회의를 통해, 정부는 민간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을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114건(총 발굴과제 120건)의 해결방안을 확정\*하였고, 인공지능·가상현실·핀테크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으며,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음
  - \* 상반기 해결과제 141건(총 발굴 151건, 수용률 93%)포함 시, 총 발굴과제 271건 중 255건 개선방안 확정(수용률 94%)

#### ◆ 원칙개선, 예외소명 방식의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

- 신산업투자위원회, 총 271건의 신산업 규제애로 중 255건 해결, 과제 수용률 94% 달성
- 전용 주파수 할당 및 레이더 입력전력 제한 완화 등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
-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 대상 확대 등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촉진
-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등 친환경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산

#### ◆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

- (가칭)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, 인공지능 관련 핵심 제도이슈 정비
- 가상현실(VR)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VR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
-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,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

#### ◆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규제 혁신

-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에 대해 상업,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
-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창의활용 및 투자 활성화 기대

정부는	2.16(목)	황교안	대통령	권한대행	주재로,	관계부처	장관,	민간
전문가,	연구기관	장이 참여	하는 <b>신</b> 4	산업 규제혁	신 관계정	<b>}관회의</b> 를 기	개최하9	였다.

-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, '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'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
-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△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
   △인공지능・가상현실・핀테크 규제혁신 △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
  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, 논의되었다.
- 이번 회의는 세계가 '4차 산업혁명'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.

우선,	△민간	주도 △ 원	실칙개선·	예외소	:명	△국제적	규제	최소성	원칙
하에	신산업	규제개혁	의 핵심	체제로	자리	믜매김한	'신산'	업투자위	[원회
운영기	성과 및	향후 계획	'이 보고	,, 논의5	티었	다.			

-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과제를 해결한데 이어, 하반기에도 120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94%의 놀라운 과제 수용률을 달성하였으며, 이 중 이미 62건('17.1월기준)의 과제는 조치완료 되었다.
  - \* 제9차 무역투자회의시('16.2월) 해결과제 53건 별도
- 이러한 결과는 민간 주도 네거티브 심사기구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키로 하였다.
- 금일 발표된 과제들은 △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△19대 미래성장 동력 등 최근 신산업 동향을 분석, 선정된 유망 신산업 분야<sup>\*</sup> 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, 업계・경제단체 간담회, 관계부처 등 다양한 발굴 경로를 거쳐 마련되었다.
  - \* △**스마트 무인이동체**(자율주행차·드론) △**ICT융합**(IoT, 빅데이터) △**바이오헬스** (유전체·바이오, 의료기기·의료정보) △**핀테크** △**신재생에너지** 등
- □ 또한,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핵심 응용분야인 '인공 지능·가상현실(VR)·핀테크 분야 규제혁신' 대책이 보고·논의되었다.
  - △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도래하는 '지능정보사회'에 대비하여 '지능 정보사회 기본법' 제정을 추진하고, 인공지능 안전성, 사고시 책임 등 핵심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△VR 업계가 애로를 겪는 콘텐츠 심의, 안전성 검사,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하였고 △가상통화 제도화,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하였다.
  -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인프라가 마련되어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고, 가상현실 응용 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핀테크 규제 개선으로 금융편의성 향상과 관련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□ 이와 함께,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'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'방안도 보고·논의되었다.
  - 그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· 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고, 민간의 혁신적 창의성 활용을 위해 민간의 사업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.
  - 이를 통해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난 입체적 도시 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미관의 향상과 공간 활용 극대화는 물론, 단지 짓고 만드는 도로 건설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□ 한편, 이날 회의에 참석한 **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**(KDI)은 **규제개혁이**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
  -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,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, 시범사업,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.
    - \* KDI분석 결과, 원료목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화장품법 개정 (2012년) 후 화장품 생산액과 생산량이 각각 27%, 19% 증가

#### 〈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안건 〉

- ①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(국조실)
- ② 인공지능, 가상현실, 핀테크 규제혁신(미래부)
- ③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(국토부)
- ※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 별도 보도자료 배포
- □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되는 부처별 보도자료 참조

#### 안건 주요내용

#### 1 (국조실)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

- 신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 '신산업투자위원회'를 구성 ('16.3.18.)하여, **'원칙 개선, 예외 소명**'의 **네거티브 심사** 방식 도입
  - \* 5개 분과(무인이동체, ICT융합, 바이오헬스, 에너지·신소재, 신서비스산업) 80명
- 지난해 **하반기에 120건 발굴 과제 중, 114건을 개선**하는 등 '16년 말 기준으로 총 271건의 과제 중 255건을 개선하여 **수용률 94**%를 달성
  - ※ 지난 상반기에는 15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41건 개선방안 마련
- 올해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\*의 선제적 구축(Top down)과 전문가 심층면접 · 관계부처 협업 등에 기반한 현장 규제애로 발굴 (Bottom up)병행 예정
  - \* 미래지향적 규제지도(Futuristic Regulatory Map): 미래에 도래할 신기술·신산업의 전개양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정비계획
-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
- ① 자율주행차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관련 기술기준을 완화하여 자율주행차용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가능해집니다.
- (현행) 자율주행차 레이더 안테나 입력전력기준(10mW이하) 규제로 자율차용 고성능 레이더 생산에 한계
- (개선) 레이더 안테나 전력입력기준(10mW)을 레이더 전체 상한에서 안테나 개당 입력기준으로 완화하여 다중 안테나 설계 가능
  - ⇒ (개선효과) 다중 안테나 설계로 자율주행차 레이더의 해상도·정확도를 국제 수준으로 제고시켜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

##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요건 완화로 개인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.

- (현행) 개인 적격투자자는 소득(금융소득, 시업·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)만을 기준으로 제한
- (개선) 개인 적격투자자 요건에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관련 자격증\* 소지자도 포함
  - \* 금융투자분석사(RA), 투자자산운용사(IM), 재무위험관리사(FRM), 투자권유자문인력, 국제투자분석사(CIIA), 국제재무분석사(CFA)
  - ⇒ (개선효과) 투자 잠재력이 있는 투자자 추가확보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

#### ③ 신의료기기·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진입이 촉진됩니다.

- (현행) ① 신규 치료재료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금액 산정 시 제조원가의 1.78배(최대)를 일괄 적용하여 개발비용 회수 곤란
  - ② 임상근거 창출이 어려운 경우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 · 활용 제한
- (개선) ① 치료재료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
  - ②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이 부족한 신의료기술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토록 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제공
  - ⇒ (개선효과) 치료재료 관련 국내외 자본의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활성화, 안전성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

# ④ 친환경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막는 사업 추진·운영의 걸림돌이 제거됩니다.

- (현행)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모호\*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애로
  - \* 법령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불명확하여 지자체간 해석 상이로 관련 사업자 애로
  - ② 발전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필요 ※1천킬로와트 미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
- (개선) ① 구체적인 사업계획(사업부지, 설계도면, 토지이용계획 등)이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단계(예: 개발행위허가)에서 협의토록 기준 명확화
  - ② 발전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
- ⇒ (개선효과) 사업 준비기간 단축, 불확실성 해소 및 운영부담 감소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·활성화 촉진

#### 2 (미래부) 인공지능·가상현실·핀테크 규제혁신

-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, 가상현실,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정비 추진
-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
- 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법제도가 선제적으로 정비됩니다.
  - (가칭)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, 핵심 법제도 이슈 정비방향 제시-
- (현행) ① 지능정보사회 방향제시, 일관된 제도 기준 등을 위한 기본법 부재
  - ② 인공지능 안전성, 사고시 법적책임 등 법제도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정비방향 제시 미흡
- (개선) ① (가칭)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
  - ② 인공지능 확산 관련 핵심 법제도 이슈\* 관련 정비방향 제시
  - \* 인공지능 안전성, 사고 시 법적책임, 기술개발 윤리, 데이터 · 지재권 보호
  - ⇒ (개선효과)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, 제도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민간 투자 유도
- ② 가상현실 산업 관련 개발과 창업이 편리해 집니다.
  - VR게임기기 심의절차 완화, VR 신산업에 맞는 안전·시설규제 정비 -
- (현행) ① 일부 VR기기의 신규 콘텐츠 심의 시 H/W까지 제출 필요
  - ② 게임산업법에 VR 게임기기 안전기준이 없이 이용자 안전보호에 미흡
  - ③ 사행성·음란물 이용방지를 위한 PC방 칸막이 높이 제한(1.3m이하)으로 VR방 높은 칸막이\*설치 불가
    - \* VR방의 경우 이용자 보호(몸동작으로 인해 충돌방지)를 위해 높은 칸막이 필요
- (개선) ① 출장 심사, 동영상 심사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심의 편의성 제고
  - ② 이용자 안전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VR기기 안전기준 마련
  - ③ 강화유리 등 투명한 칸막이 설치할 경우 1.3미터 높이 제한 규정 미적용
  - ⇒ (개선효과)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 및 VR 게임 이용자의 안전 확보

- ③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되고, 금융 편의성이 높아집니다.
   가상 통화 제도화,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규제정비 -
- (현행) 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율 필요
  - ② 핀테크 기업이 해외송금을 할 경우 금융회사 등과 연계 필요
- (개선) ①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
  - ②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
  - ⇒ (개선효과) 금융 편의성 향상 및 관련 창업 활성화 기대

#### 3 (국토부)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

- 도로 공간의 융·복합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개발과 건축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
- 현재 도로 상공·지하는 공공위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, 앞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허용하여 도시공간의 다양하고 효율적 활용 기대
-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

### ① 민간이 도로의 상공과 지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 - 민간의 도로 공간 개발 및 사용권 부여-

- (현행) 도로의 상공·지하는 공공 위주(지하철, 공공지하상가 등)로 이용이 허용되고, 민간의 사적이용은 제한
- (개선) ① 도로 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상부 공간의 활용 허용
  - \* 관련지침 마련, 도로개발 이익 환수제 시행, 안전관리제도 도입
  - ② 도로 지하에 대한 상업, 문화, 업무시설, 공간통합 등 다양한 용도 개발 허용
- ⇒ (개선효과) 민간 개발 허용으로 창의적 도시 공간 조성 기대

- ② 도로 상공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, 도로 구획을 넘는 통합 건축물이 가능해 집니다.
  - 건축선 규정 완화, 도로·건축의 통합설계기준 마련-
  - (현행) ① 도로로 구분된 구획 내에서 사각형 모양 위주의 건축물 조성
    - ② 도로로 인한 구획 분리로 건물간 이동에 애로
  - (개선) ① 도로 상부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로점용, 건축선 규정 등 완화로 도로 상공에 건축물 건축 허용→ 도로구획을 넘는 건축물의 통합적 설계 가능
    - ② 건물간 연결이 활성화 되어 보행 중심의 시가지 통합
  - ⇒ (개선효과) 도로와 건축의 융복합으로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- ③ 소규모 주택의 개발이 활성화되고, 아파트 공동관리가 가능해 집니다.
- 도로 지하·상공공간 활용 시 가로주택정비구역 범위 확대, 단지간 공동관리 허용-
- (현행)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차 공간 및 사업성 확보 어려움
  - ② 아파트 단지 간 8m이상 도로가 지나는 경우, 단지가 분리되어 공동관리 불가
- (개선)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, 주택간 통과도로의 상공·지하 공간 통합개발로 공간 확보 및 사업성 개선
  - ② 도로의 지하·상공을 통해 아파트 단지 간 결합할 경우 공동관리를 허용하여 관리비용 감소
- ⇒ (개선효과)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및 아파트 공동관리 효율성 증대
- ④ 도로의 상부와 하부공간이 문화·관광 공간으로 거듭납니다.
  - 도로구역 내 시설 제한 완화, 고가도로 하부 이용 규제 완화 -
  - (현행) ① 지하도로 지상공간은 공원 등으로만 활용 가능
    - ② 고가도로 하부는 창고, 주차장 등 제한적 허용
  - (개선) ① 지하도로 건설 시 상부공간에 공연장,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
    - ② 고가도로 하부를 문화복리시설, 임대주택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
  - ⇒ (개선효과) 문화·관광 공간 확충으로 도심 활력 제고